###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799 제출연월일: 2024. 10. 21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적·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,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'정당한 사유'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6제1항제5호 중 "등록 후"를 "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열화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6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6(등록 취소 등) ① 시・	제5조의6(등록 취소 등) ①
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계열	
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	
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	
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	
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	
수 있다. 다만 제1호, 제2호, 제5	
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	
다.	<b>.</b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등록 후</u> 6개월 내에 영업을	5. <u>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</u>
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	
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	
아니한 경우	
6. ~ 8. (생 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